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문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재산정책국 | 과 장 이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42-481-8172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재산인력과 | 사무관 정희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42-481-5183 |
|  |         | <b>2016년 9월 27일(화) 조간부터</b>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><b>인터넷매체는 9월 26일(월) 낮 12시 이후</b> 게재 바랍니다. |              |

## 특허청, 27일부터 「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」 모집

### - 제6차(2017~2021년)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신청공고 발표 -

특허청(청장 최동규)는 지식재산 교육에 관심이 있는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‘제6차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’ 3곳을 2016년 9월 27일(화)부터 10월 27일(목)까지 모집한다.

‘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사업’은 대학(원)에서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이후 매년 3~4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고 있다.

‘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’으로 선정되면 대학당 연간 1억8천만원, 5년간 최대 9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, 지식재산 전담교수를 1명 이상 채용하여 2017년 1학기부터 대학 및 대학원에서 지식재산 정규교과목을 최소 2강좌 이상, 연간 총 6강좌(18학점) 이상 개설·운영하게 된다.

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원한 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지식재산 교육실적, 지식재산 교육계획, 전담교수 채용 계획, 사업비 운영계획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1차 서류(11월 1일) 및 2차 발표(11월 3일)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절차를 진행하여 11월 9일(예정)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.

특히, 이번 선도대학부터는 ▲특허 관점에서 연구전략을 수립해보는 ‘IP R&D 교육’ ▲여러 계열의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허 권리화·기술이전 등을 직접 수행해보는 ‘융합 교육’ ▲체계적인 지식재산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 대해 ‘지식재산교육 인증’ 제도 도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.

사업신청을 원하는 대학은 특허청([www.kipo.go.kr](http://www.kipo.go.kr)) 또는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([www.kipa.org](http://www.kipa.org))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 관련 서류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2016년 10월 27일(목) 18시까지 한국발명진흥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.

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“강한 특허 확보 등 질적으로도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교육이 중요”하다며, “학생들이 지식재산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나 지식재산 전문가를 꿈꿀 수 있도록, 지식재산교육에 열의를 가진 대학들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인력양성실 연효진 계장(☎ 02-3459-2804),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정책경 사무관(☎ 042-481-5183)에 문의하면 된다.

## **제6차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신청 공고**

『제6차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9월 27일      특허청장

### **1. 사업목적**

-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, 대학의 자립적인 지식재산 교육기반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

### **2. 사업내용**

#### **□ 지원대상**

- 2017년 1학기부터 대학(원)에서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
  - \*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(법인)을 본교와 분리한 대학만 별도로 신청 가능
- 지원제외 대상
  - 특허청 ‘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지원사업’ 주관대학(지원종료대학 포함)
  - 특허청 ‘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’ 지원이 종료된 주관대학
  - 교육부 지정 ‘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
 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(주관대학, 주관대학의 장, 총괄책임자 등)
    - \* 국가R&D사업관리 홈페이지(<http://rndgate.ntis.go.kr>)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

#### **□ 지원규모**

- 대학당 연간 1억 8천만원 이내 최대 5년간(총 9억원 이내) 지원
  - \* 3년 경과시 중간평가를 통해 예산 차등지원 및 결격사유 발생시 지원 조기 종료 가능
- 6차 지원대상(‘17~’21)으로 3개 대학 선정 예정
  - \* ‘17년 이후 선정되는 대학 수 및 관련 지원 계획은 당해년도에 공고

## □ 지원조건

- 지식재산 정규교과목 연간 6강좌(상당학점 18학점) 이상 개설
  - 학부 및 대학원 각각 최소 2강좌(상당학점 6학점) 이상 개설·운영
  - 분반 시 개별 강좌로 계산 가능
  - 과목 일부만 지식재산 관련 내용일 경우, 개설학점 중 지식재산 관련 내용의 비중만큼만 학점 인정
    - \* 예) 3학점 과목을 16주중 4주 간 지식재산 내용으로 교육한 경우, 0.8상당학점으로 인정
  - 대학(원)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을 활용한 자체 교육커리큘럼 설계 및 운영
- 강좌를 전담할 전담교수 확보(1명 이상)를 비롯한 교육 인프라 구축
  - \* 전담교수의 자격요건 :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하는 자
    - 국내 변리사 자격 취득 후 지식재산 실무경력 5년 이상
    - 지식재산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
    - 기업·대학·공공기관 등에서 지식재산 실무 및 교육경력 10년 이상
  - \* 전담교수 확보 인정요건 : 연간 최소 강의 시수이상 지식재산 정규교과목 개설·강의  
(각 대학 무보직 전임교수 기준 적용)
- 기타 특성화된 우수 지식재산 교육모델의 창출 및 확산

## □ 사업비 지출항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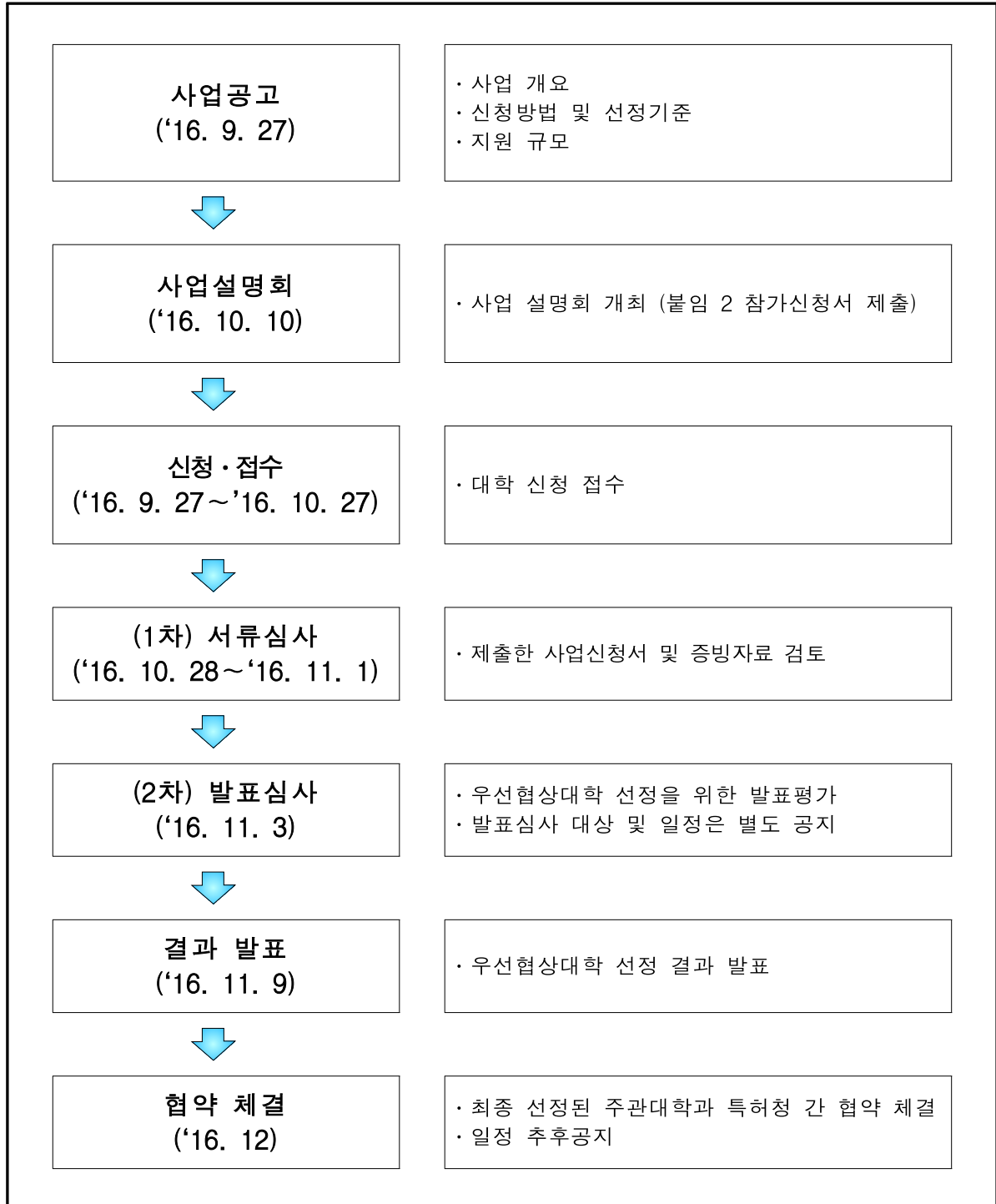
- 정부지원금 주요 사용항목
  - 지식재산 전담교수 확보비용 및 인건비
  - 학생 및 교수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발명활동 지원
  -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비용
- 주관대학 대응투자 주요 사용항목
  - 참여교수 인건비(참여율 적용)
  - 직접비(교육시설 임대료, 특허검색 유료 DB사용료 등)

## □ 선정취소

- '17년도 계획(사업신청서 기준)의 정량지표(지식재산 강좌개설 수, 전담교수 채용, 대응투자 등)를 당해년도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, 미달성 분량만큼 사업비 환수 후 선정취소 가능

### 3. 선정 추진절차(안)

- 공모(경쟁)를 통해 우선협상대학을 운영위원회가 심의·선정
- 선정평가항목 : 붙임 1 참조



\* 상기 추진일정(안)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우선협상대학은 ‘17년도 지식재산 강화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함

## 4. 신청방법 및 기타 안내

### □ 선도대학 사업설명회

- 사업설명회(안)
  - 일 시 : 2016년 10월 10일(월) 14시
  - 장 소 : 한국발명진흥회 19층 대회의실 (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)
  - 참가신청서 제출 : 2016년 10월 6일(목) 16시까지 [붙임2 참가신청서] 제출
  - 주요 내용 : 선도대학 운영현황 발표, 선정계획 발표, 질의응답 外
  - 설명회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(공고문 및 사업신청서 양식을 지참하여 참석)

### □ 제출서류

- 신청공문 1부
- 사업신청서 원본 10부 혹은 원본 1부 및 제본 9부(원본대조필 날인)
  - ※ 날인된 직인에 대한 증명서 제출 必
- 사업신청서 요약본 10부(Power-point로 작성 후 제본)
- 증빙자료 제본 총 3부  
(모든 증빙자료 한권으로 사업신청서와 별도로 제본, 원본대조필 날인)
- 신청 관련서류 일체 수록 CD 1장

### □ 신청방법

- 신청서 : 특허청([www.kipo.go.kr](http://www.kipo.go.kr)) 또는 한국발명진흥회([www.kipa.org](http://www.kipa.org))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가능
- 제 출 : 우편 또는 방문접수
  - 2016년 10월 27일(목) 18시 限 도착분에 한함.
  - \*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
- 제출처 : (06133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 
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

### □ 문의처

-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정희경 사무관 (☎ 042-481-5183)
-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연효진 계장 (☎ 02-3459-2804)

| 평가항목 (배점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방법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면   | 발표 |
| 최근 2년간<br>지식재산 교육<br>및 활동실적<br>(10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1) 지식재산 정규강좌 개설실적                    | 5    | -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2) 지식재산 실전대회 참여 및 수상실적               | 2    | -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3) 지식재산 교수 프로그램(T3) 수료자 수            | 2    | -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4) 지재산 확산을 위한 사업참여 및 활동실적            | 1    | -  |
| 1년차<br>지식재산<br>교육계획<br>(50)         | 지식재산<br>정규강좌<br>(37)        | (5) 학년별 지식재산 교육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| 10   | -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6) 공대 내 사업 참여학과 수                    | 4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7) IP-R&D 교육 반영의 적절성                 | -    | 2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8) '17년 지식재산 정규강좌 개설                 | 10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9) 공학인증 수업 내 지식재산 강좌 개설              | 4    | -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10) 다학제간 지식재산 융합강좌 개설계획의 적절성         | -    | 3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11) 정규강좌 개설 전공분야의 수                  | 4    | -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체 지식재산<br>교수 교육<br>프로그램(8) | (12) 자체 교수교육 운영 횟수                    | 5    | -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13) 교수교육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적극성             | -    | 3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내외 지식재산<br>인식제고 활동<br>(5)  | (14) 기타 교내외 지식재산 인식제고 활동의 구체성 및 독창성   | -    | 5  |
| 중장기<br>사업계획<br>(10)                 | 중장기<br>사업계획(8)              | (15) 중장기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            | -    | 3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16) 대학 내 IP교육 정착을 위한 운영체계의 적극성 및 독창성 | -    | 5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 종료 후<br>지속 가능성(2)        | (17) 지식재산 교육 지속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         | -    | 2  |
| 지식재산 전담교수<br>채용계획 (25)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18) 전담교수 신분안정성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| 5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19) 전담교수 평가체계 및 활동계획의 적절성            | -    | 10 |
| 사업비 운영계획 (5)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20) 대응투자의 규모 및 적절성                   | 3    | -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21) 사업계획과 사업비 운영계획 연계의 적절성           | -    | 2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0   | 40 |